

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

제출법인	①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		
	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⑦ 창업일 년 월 일	

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	⑧ 창업중소기업 []	⑩ 창업보육센터사업자 []	⑫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[]
	⑨ 청년창업중소기업 []	⑪ 창업벤처중소기업 []	⑬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[]
창업 지역	⑮ 수도권과밀억제권역 []		⑯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[]
수입금액	⑰ 8,000만원 이하 []		⑱ 8,000만원 초과 []
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
감면세액계산내용				
기본 감면 (최저한세 적용)	⑲ 감면대상 산출세액	⑳ 감면비율	50%	[]
			75%	[]
			100%	[]
	㉑ 기본 감면세액(⑲ × ㉑)			

추가 감면 (최저한세 배제)	1. 공제요건 :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[] 여 [] 부 가.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물류산업 : 10명 나. 그 밖의 업종 : 5명			
	2. 고용증가 인원 계산			
	㉒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	㉓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	㉔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(㉒-㉓)	
	명		명	
	㉕ 감면대상 산출세액 (=⑲)	㉖ 감면비율 (=㉑)	㉗ 고용증가율 (㉔/㉓)	%
			㉘ 한도율	50%(25%)
			㉙ 추가감면율 Min(㉗, ㉘)	%
㉚ 추가 감면세액(㉕ × ㉙)				
㉛ 총 감면세액[Min{(㉑+㉚), 5억원}]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1. ⑰, ⑱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.
2.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"㉓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"에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적습니다.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, 같은 조 제1항(100%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, 제6항(100%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